

外國 大學의 開放體制

權 彛 鍾

(全北大 教育學科)

우리들은 최근 '福祉社會'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복지사회를 형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으나 모든 국민들이 원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대학의 開放體制를 통한 教育福祉를 구현하는 것은 다른 어느 요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

I. 머리말

開放化 정책 운동이 1980년 이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 운동은 교육정책 면에서도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문교부에서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社會教育法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1983년 9월 10일자로 사회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등교육은 물론 大學의 開放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베풀어 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적으로 대학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개방되고 운영된 것은 1972년 최초로 韓國放送通信大學이 2년제 인문계 초급대학으로 開校함으로써 출발되었고, 1981년에는 학사과정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자연계열 개방대학은 1982년 경기공업개방대학과, 1984년 부산개방대학, 대전개방대학이 있고, 실업계열은 광주개방대학

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개방체제로 운영되리라 믿는다.

이 외에도 최근 많은 대학 및 종합대학교들이 각종 社會教育 및 平生教育 프로그램을 두어 개방·운영하고 있다.

평소 사회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개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개방대학을 설립하는 추진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대학의 확장 및 개방에 대한 문헌을 다루어 온 바 있다. 차게에 外國의 大學擴張 및 開放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小考가 이미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대학이나 앞으로 개방하여 운영할 대학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大學 開放學習의 필요성

만일 한 사람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잘못된 教育

政策이나 教育制度 때문에 教育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할 최선의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욕구가 대단히 많다. 教育欲求 또한 다른 어느 욕구 못지 않게 중요하며, 충족되어야 할 욕구이다.

이미 많은 나라는 이러한 국민들 개개인의 學習欲求를 가능한 한 많이 채워 주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 教育정책 및 教育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으며, 教育改革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만이 아닌 사회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教育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사회교육의 대상 인구가 주요하게 포함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전체 국민의 약 3/4이 사회교육대상자이다).

우리는 오늘날 급격히 變動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는 時間的, 空間的으로 한계가 있는 학교교육에서 받은 알팍한 지식만으로 원만히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의 성장 발달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 발전의 原動力이 될 수 있는 학교의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사회 교육은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學習社會 구현을 위한 지름길이다. 사람이 생존하는 한 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 사람이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 글이 잘 입증하여 주고 있다.

“論語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孔子는 15세부터 修業을 하여 끊임없이 人格이 成長하여 70세에 이르러서는 험쓰지 않고도 道에 맞고 생각치 않고도 얻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음내키는 대로 처세하여도 규범에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하였다.”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통합될 때 그 효과가 크다. 이에 正規教育機關은 정규 학생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하여 개방되고 확장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최근 ‘福祉社會’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복지사회를 형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으나 모든 국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의 개방을 통한 教育福祉를 구현

하는 것은 다른 어느 요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육이 과잉 생산됐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나 平生教育的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교육받은 인구가 많을수록 加速化된다고 하겠다. 교육받은 인구는 국가, 사회의 民主化 促進은 물론 國家發展을 위한 가장 유익한 자원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아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는 데에도 매우 의의가 있으며 필요한 教育정책이다.

Georg Zehmer는 대학교육의 확장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개방된 새로운 教育방법과 수단을 발전시키고 또 教育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教育의 機會를 확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고등교육적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학의 擴張 및 開放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온, 엘리트와 특정인을 위한 폐쇄적이고 경직된 현행 상아탑식 대학교육에서 탈피하여 기능적인 운영과 개방을 통해, 繼續教育을 희망하는 청년 및 성인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되도록 많은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사회변동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能力人을, 사회나 국가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의 확장 및 개방의 필요성은, 높은 向學熱을 가지고 있지만 自意전 他意건간에 개인적, 연령적, 지역적, 경제적 제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년 및 성인들에게 별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학비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高等教育의 大衆化를 꾀하려는 데 있다.

대학 확장 및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몇 가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나라마다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회구하는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둘째, 평생교육의 구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세째, 現存하는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및 교육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다.

네째, 대학의 教授選員 확보 및 施設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투자의 한계성에 있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國民教育 수준을 향상시키고 繼續教育의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학령, 입학시기, 수학년 연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教育對象者의 처지, 형편, 능력에 따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한다.

Ⅲ. 大學開放의 史的 배경

대학의 地域社會 주민을 위하여 개방하기 시작한 최초의 나라는 영국이다. 초창기에는 청소년 및 성인들이 대학에 찾아와 계속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학 교수요원들이 工業區地에 초빙되어 근로자들을 위하여 강의하기 시작했었는데, 각 직장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은 대상자 수가 증가되어 그 교육 대상자들이 대학 學內에 찾아와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리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의 대학 개방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국 대학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開放體制(University Extension)로 운영한 것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영국 대학이 開放學習體制로 발전하여 온 것은, 대학이 門戶를 개방 및 확장하여 운영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대학에 각종 교양 및 전문코스 프로그램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많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대학으로 찾아온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대학의 확장은 1903년에 조직된 ‘勤勞者 教育協會(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WEA)’가 초창기부터 대학과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실시되어 왔는데, 그 이후로는 1920년대에 설립된 “大學成人教育部(Extra-mural Department)”가 이 업무를 관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영국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

학을 개방한 나라들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이며, 영국 대학 개방의 자극을 받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은 많은 國民大學을 건립하여 오늘날까지 국민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로는 석독과 오스트리아로, 이 두 나라는 1890년경부터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1945년 이후부터는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직접적 영향을 받아, 성인들을 위하여 대학을 확장하여 운영한 것이 高等教育史에 잘 기록되어 있다.

Ⅳ. 地域社會 奉仕를 위한 대학 개방

대학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의 세 가지 기본 임무를 잘 알고 있다. 첫째는 연구하는 대학, 둘째는 가르치는 대학, 그리고 셋째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대학이다.

유럽 몇몇 社會教育 학자들은 2000년대부터 모든 선진국의 모든 대학들이 성인들을 위하여 개방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開放體制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경우 본업이 학생인 正規學生數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겠으나 모든 성인을 위하여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봉사활동이다.

대학이 地域住民을 위하여 진정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려면 아래와 같은 현행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1.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문제 : 대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대학 밖의 주민들의 教育欲求度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학과 사회와의 連繫性이 있는 교육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면에도 앞으로 다시 수정·보완되거나 새로 개발을 할 경우 성인들을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육방법 문제 : 현행 강의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교육 대상자들이 모든 교육 활동에 能動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논문식, 세미나식, 토론식, 그룹작업, 강의 및 토론 절충식)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3. 대학 구조 및 운영에 관한 문제 : 대학의 구조·기능·운영적 측면이 특정한 위주로 되어 있어 한번 大學入學 機會를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구조·기능·운영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하겠다.

4. 대학 개방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 대학 개방의 필요성을 대학교육 정책 수반자, 대학 운영자, 각계 사회 지도층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개방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학이 개방되어 地域社會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5. 교육개혁자와 정치인들 사이의 권력 싸움 문제 : 교육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長期的인 계획의 토대 위에서 교육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데 비해 많은 정당 및 정치가들은 교육정책을 하나의 일시적인 정치 도구와 선전 도구로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갈등이 심해 교육적 阻害要因이 많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교육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싸움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6. 대학과 사회와의 연계 문제 :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敎育對象者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産業體에서 일하는 유능한 資源人士들을 대학 강사로 초빙하는 방법이나, 대학이 직장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학과 산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7. 계속교육의 제도적 보장 문제 : 연간 多學期制 運營은 물론 季節學期制, 全日制와 定時制, 夜間學習制度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한다.

V. 外國의 大學 擴張 및 開放

1. 西獨의 경우

독일은 대학에서 성인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사회교육 專門要員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각 지역사회에 설립되어 있는 국민대학과 사회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 의해 성인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대학과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성인교육은 한 학기 동안의 야간 세미나, 집중 코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특히 서독 일반대학이 성인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기는 1976년부터 大學敎育法(제 2조 제 3항)에 “대학은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개방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교직원들은 계속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法規가 제정된 뒤부터이다.

영국 개방대학과 비슷한 ‘통신大學(Fernuniversität)’은 1975년 하겐(Hagen)에 설립되었으며 時間制 學習方法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대학은 독일의 대표적 대학 개방체제로 중앙에 중앙센터와 지역에 지역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1978년 당시 통신대학의 재학생수는 11,600 명이었으며, 전체 학생 중 11%만이 공부만을 本業으로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전체 학생의 75%는 이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며 약 89%가 직장에 다니며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연령 중 25~28세까지가 약 80%에 달하고 있었다. 통신대학의 학위과정은 대학입학 자격증(Abitur)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진다. 非學位課程은 고등학교 졸업증과는 무관하다. 통신대학은 독일 국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2. 덴마크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덴마크 대학은 대학 스스로 成人敎育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교육기관 수준의 국민대학이 약 140년 전부터 각 지역사회 단위로 설립되어 온

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반대학이 있는 곳에 역시 國民大學이 설립되어 있다. 국민대학은 사회 각계 각층의 개인 및 단체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국민대학이 개인 사립단체에 의하여 설립되어 自律性이 보장되거나 전체 운영비 85%의 재정은 정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財政支援은 할지라도 교육내용, 방법 및 운영 기타 면의 교육활동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국민대학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대학 교수들이 강사로서 국민대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현 덴마크 85개 국민대학에 참여하는 연간 교육 대상자들은 약 2~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일반 종합대학교도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대학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주로 자연계열과 경제계열이 많다. 이 코스는 學點制, 非學點制가 있다.

3.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도 대학을 개방하여 일반 성인들로 하여금 繼續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유럽 나라들과 같이 프랑스는 1970년 勤勞者協會와 雇傭主協會 사이의 공동 관심하에 1975년부터 教育休假制法을 제정하여 직접 계속 교육을 국가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교육휴가제법은 직업에 아무런 위험이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에 의하여 교육휴가를 받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교육휴가제법이 제정된 후 많은 직장인들이 대학교육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직장인 대학교육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대학은 자연히 성인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이 참여하는 성인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는 對面學習制度가 있다. 對面學習制度란 대학 교수들이 지역주민들과 대면하여 각종 강좌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과 직장 간부 및 사회단체 성원 등으로 구성된 諮問委員會도 대학과 직업세계가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한 예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직장을 알선하고 대학과 직장간의 각종 성인 및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

는 일이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성인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수들의 대학 강의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 대학들은 成人教育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그 종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 및 정치적 요구 때문에 대학에서의 성인교육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4. 英國의 경우

영국은 38개 대학에 成人教育部가 설치되어 있으며 340명(1978년 당시)의 독자적인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약 1만명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정부나 대학에 의해 임용되었다. 정식 교수요원들은 대학교재의 모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일반 강의도 맡고 있다. 그러나 교수진들의 주 임무는 성인교육부의 모든 교육을 계획·조직·운영·평가하여 성인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성인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구나 본인의 학습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대학 성인교육부의 傳統的인 教育內容은 주로 일반 교양교육으로 고고학,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등이 전체 과목의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手工業 직업에 관한 학문의 과목이다.

영국에서 성인교육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교육형태로는 對面學習(Kontaktstudien)이 있다. 직업인들의 계속교육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이 과정은 대부분의 대학 출신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세계 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대학 성인교육부에 特別職業 繼續教育課程을 두어 실시한 對面學習의 형태로 Manchester 지방의 사회사업가 코스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기업 경영자 코스, 근로자협회 지도자 코스도 운영된다. 이 외에 정부 고급 공무원, 군장교, 법관, 경찰, 사업가, 병원 운영자, 의사, 종교가, 건축가, 농민 등을 위한, 각종 직업 그룹코스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심포지움 등이 주최된다.

대학 성인교육의 또 다른 유형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이다. 開放大學의 出帆은 전 세계 대학 개방교육에 회

기적인 발전을 유도한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 개방대학은 영국에 살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대학이다. 개방대학 학습방법은 遠隔 敎育方法으로서 라디오,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문을 도와주며 학습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있다. 1978년의 경우 45,000 명의 대학생이 개방대학에 등록하였다. 이들 학생의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개방대학의 출범은 상대적으로 정규 대학생수를 줄이는 요인이 되어 정부의 재정 투자의 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5. 이태리의 경우

이태리의 대학 성인교육은 勞動組合에 의하여 사회·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태리는 대학 성인교육으로 교육휴가와 '150시간 모델'이라는 유형을 제도화하였다. 즉 1973년 철강 및 기계 기업체 고용주측과 근로자측 사이의 공동계약을 맺음으로써 '150시간 모델'이 시도되었다. 이 계약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3년내에 150시간의 교육휴가를 받아야 한다. 契約條件은 자기기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섬유회사의 경우 120시간, 인쇄소는 2년 기준으로 100시간, 농부는 연간 6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휴가를 가장 많이 주는 경우는 250시간을 허용한다. 150시간 모형 敎育休暇制 혜택은 근로자뿐 아니라 가정주부, 실업자 등에게도 주어지는데 이태리 성인교육의 발전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 교육휴가제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다.

모든 근로자들은 연간 150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허가된 교육휴가 시간을 이용하여 勞動組合과 敎育者協會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이 코스는 일정한 학교 졸업장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의 학교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150시간 模型은 일반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학측에서는 이 제도가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나, 실제 직장인들이 대학 성인교

육을 받는 것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직장인들이 교육받는 동안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일반대학이 가장 잘 개발된 나라로서 비교적 모든 대학이 직장인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成人들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구조는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잘 발달되었다. 성인들의 1/3 이상이 이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스웨덴은 두 가지 類型의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하나는 대학에서의 성인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성인교육이다. 대학에서의 성인교육은 스터디 그룹의 형태로 되어 있다. 스웨덴 전 지역에 2,000여 스터디 그룹이 있으며 매년 3,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履修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생들은 정규 학생들처럼 각 학기에 전 과목을 이수할 수는 없고 코스 및 학점별로 대학과정을 밟게 되는데, 교육 대상자 임의로 학점을 조정하며 대학에 다닐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조건이 매우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입학조건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5세 이상의 연령자로서 4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자(10년 이상 자기 자녀나 다른 아이를 양육한 자와 국방 의무를 마친 자)

- 11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자(일정 수준의 영어와 스웨덴어의 실력을 갖춘 자)

대학 성인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 자격증은 '학점제'로 취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소개할 수 있으나 지면 관계로 이상 끝내고자 한다. *